

박형준 / 4월 / 기초GS Plus / 16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56928	18.5	12	16	10.5	57	1	1.04%	5	96
556214	14.5	9.5	18	12	54	2	2.08%	4	
555790	16	11	15	11	53	3	3.13%	4	
556213	16.5	9.5	15.5	11.5	53	3	3.13%	4	
556383	17.5	9	16	10	52.5	5	5.21%	4	
555312	15.5	11	16.5	9	52	6	6.25%	4	
556219	17.5	10.5	15.5	8.5	52	6	6.25%	4	
556312	17	9	13.5	12.5	52	6	6.25%	5	
556043	15	9.5	17.5	9.5	51.5	9	9.38%	4	
556282	16	10	15	10.5	51.5	9	9.38%	4	
556703	16.5	9	15.5	10.5	51.5	9	9.38%	4	
556203	14.5	8	18	10.5	51	12	12.50%	4	
551074	16	10.5	16.5	7.5	50.5	13	13.54%	5	
558879	16.5	9.5	16.5	8	50.5	13	13.54%	4	
565511	15.5	9.5	13.5	11	49.5	15	15.63%	4	
554633	15	9	16	9	49	16	16.67%	5	
556205	15	7.5	14.5	12	49	16	16.67%	4	
556397	15	10	12.5	10.5	48	18	18.75%	4	
556358	16.5	8	16	7	47.5	19	19.79%	4	
556320	12.5	11.5	14	9	47	20	20.83%	5	
556321	16.5	8.5	12.5	9.5	47	20	20.83%	4	
556399	18.5	10.5	14.5	3.5	47	20	20.83%	4	
556298	15	7	12.5	12	46.5	23	23.96%	4	
556445	17.5	4	15	10	46.5	23	23.96%	4	
556423	16.5	7.5	11.5	10	45.5	25	26.04%	4	
555314	15.5	6.5	14.5	8.5	45	26	27.08%	4	
556294	17.5	8.5	10.5	8.5	45	26	27.08%	4	
556329	16.5	4.5	15.5	8.5	45	26	27.08%	4	
556471	16	7	16	6	45	26	27.08%	4	
555866	18	3	16.5	7	44.5	30	31.25%	4	
556236	15	8	14	6.5	43.5	31	32.29%	4	
554903	18.5	10.5	14	0	43	32	33.33%	4	
555801	12	10.5	9	11.5	43	32	33.33%	4	
556380	14	11.5	12.5	4.5	42.5	34	35.42%	4	
556482	12	8.5	12.5	9.5	42.5	34	35.42%	4	
556324	11.5	7.5	15	8	42	36	37.50%	5	
556473	18	10.5	13.5	0	42	36	37.50%	4	
557029	13.5	9.5	7.5	11.5	42	36	37.50%	4	
556305	14	8.5	11.5	7.5	41.5	39	40.63%	4	
556333	14.5	4	14	9	41.5	39	40.63%	4	
556409	16	6.5	14	5	41.5	39	40.63%	4	
556412	15.5	0.5	15	10.5	41.5	39	40.63%	4	
556431	15.5	8	15	3	41.5	39	40.63%	4	
556325	14	9.5	15	2.5	41	44	45.83%	4	
556044	13	12.5	14.5	0	40	45	46.88%	5	
556161	20.5	7	12.5	0	40	45	46.88%	5	
556301	14.5	10	15.5	0	40	45	46.88%	5	
556360	15	10.5	14.5	0	40	45	46.88%	4	
559826	15.5	1.5	14.5	8.5	40	45	46.88%	4	
556382	14	6.5	15	4	39.5	50	52.08%	4	
554881	17	5.5	11.5	4	38	51	53.13%	4	
556341	14	6	10.5	7.5	38	51	53.13%	4	
556421	14	6.5	12.5	5	38	51	53.13%	4	
556776	11.5	5.5	13	8	38	51	53.13%	4	
556926	15.5	11	11	0	37.5	55	57.29%	4	
554631	9.5	8.5	9	10	37	56	58.33%	4	
554737	14	9.5	13.5	0	37	56	58.33%	4	
556359	17.5	10	9.5	0	37	56	58.33%	4	
556475	15	10	10	2	37	56	58.33%	4	
556272	10.5	6.5	12	7.5	36.5	60	62.50%	4	
556316	16.5	9	11	0	36.5	60	62.50%	4	
559611	14.5	11.5	10.5	0	36.5	60	62.50%	4	

554589	16	6.5	11	2.5	36	63	65.63%	4
556434	11	4.5	12.5	8	36	63	65.63%	4
556436	12.5	3.5	12	8	36	63	65.63%	4
556408	11	8.5	12	4	35.5	66	68.75%	4
556777	13.5	3.5	11	6.5	34.5	67	69.79%	5
559560	13	6.5	15	0	34.5	67	69.79%	5
555946	11.5	10	12.5	0	34	69	71.88%	5
556483	12.5	5.5	9.5	6.5	34	69	71.88%	4
556071	4.5	11	14	4	33.5	71	73.96%	4
556154	12	9.5	12	0	33.5	71	73.96%	4
558038	12.5	8	12	1	33.5	71	73.96%	4
556499	14.5	4	13	1.5	33	74	77.08%	4
508081	13.5	6.5	9.5	3	32.5	75	78.13%	4
551072	11.5	6	14	0.5	32	76	79.17%	4
556494	9.5	5.5	9	7.5	31.5	77	80.21%	4
557685	12.5	8.5	8	1	30	78	81.25%	4
556342	6	3.5	11.5	8.5	29.5	79	82.29%	4
555692	13.5	2.5	11.5	0.5	28	80	83.33%	4
556481	10	6.5	6	5.5	28	80	83.33%	4
556430	12.5	1.5	13	0	27	82	85.42%	4
555788	12.5	5.5	8	0.5	26.5	83	86.46%	4
556322	11	10.5	5	0	26.5	83	86.46%	5
556189	12	0	14	0	26	85	88.54%	5
557152	12	1.5	11	0	24.5	86	89.58%	4
557073	8	3	7.5	5	23.5	87	90.63%	4
559375	9.5	6	8	0	23.5	87	90.63%	4
556171	13.5	0	8.5	0	22	89	92.71%	4
555807	17.5	4	0	0	21.5	90	93.75%	4
556357	11	0	9	0	20	91	94.79%	4
556151	13	0	4.5	0	17.5	92	95.83%	4
556376	8.5	3	3.5	0	15	93	96.88%	4
557238	7.5	0	7	0	14.5	94	97.92%	4
556373	9.5	4	0	0	13.5	95	98.96%	4
556906	5.5	3	0	0	8.5	96	100.00%	4

<p>박형준/4월/기빨GS/16회/1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선택발명 관련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문이었습니다.</p> <p>‘명시적 개시’, ‘내재적 개시’, ‘구체적 개시’ 등의 핵심 키워드가 적절히 포함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채점하였습니다.</p> <p>일부 답안에서 내재적 개시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선택 가능한 하위 개념 구성요소들의 조합이 이론상 수억 가지 이상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조합인 $a1+b1+c1$이 선행발명에 의해 내재적으로 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p> <p>따라서 $a1+b1+c1$에 대한 내재적 개시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p> <p>(2) 설문 2-1</p> <p>전반적으로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배점이 비교적 크므로 선택발명 진보성 판단방법 관련 판례를 두껍게 작성해 주셔야 했습니다.</p> <p>(3) 설문 2-2</p> <p>고려 가능한 효과의 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로부터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에 한정됩니다. 또한 그 기재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 후 추가 실험자료 제출을 통해 효과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더 나은 효과의 인정 여부에 앞서 을이 출원 후 효과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p>	

(4) 설문 3

다들 관련 조문과 판례를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만, 관련 판례를 기재하는 데서 답안을 마치기보다는, 문제에서 묻는 바에 대해 결론 목차를 통해 간단히라도 정리하고 넘어가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3. 소결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논점으로 구성된 문제였던 만큼 전반적으로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만, 다른 답안과 차별화를 위해 사안 포섭 등 세부적인 부분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p>박형준/4월/기뿔GS/16회/2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기능식 청구항 관련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일부 답안에서는 기능식 청구항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보였습니다. 문제에서 ‘완충’, ‘결합’ 과 같은 기능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기능식 청구항으로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p> <p>또한 신규성 판단에 앞서 청구항 1의 해석을 먼저 검토해 주셔야 했습니다.</p> <p>한편,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 논점을 중심으로 작성하신 경우에는 문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점수를 거의 부여하지 않았습니다.</p> <p>(2) 설문 2</p> <p>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다만, 설문 1과 마찬가지로 청구항 1의 해석을 누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p> <p>청구항 1에는 기능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항의 기재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발명의 설명 등에 기재된 구체적 구조를 기준으로 기술적 구성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3. 소결

논점 이탈이 가장 많았던 문제였습니다. 기능식 청구항 문제의 경우, 기능식 청구항임을 파악하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논점을 이탈하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오답노트에 체크해 두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박형준/4월/기뿔GS/16회/3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PbP 청구항 관련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기본적인 단문 문제로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다만, 청구범위 해석방법 판례를 설문 2, 3에 작성한 경우가 일부 있었는데, 설문 1의 배점이 15점임을 고려했을 때 관련 판례를 설문 1에 모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p> <p>(2) 설문 2</p> <p>단일성의 경우 이미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문제되지 않으므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위주로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p> <p>각 청구항 별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적절히 판단한 경우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또한, 등록의 적법성 여부도 청구항 별로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p> <p>(3) 설문 3</p> <p>제2항에 기해 침해 금지 경고를 하였으므로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청구항을 고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p> <p>청구항 2의 권리범위에 대하여 제조방법 “방법 A”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3. 소결

각 설문의 배점을 고려하여 작성할 판례의 배치를 적절히 조절해 주셨어야 합니다. 답안 작성 전에는 문제를 먼저 전체적으로 읽고, 대략적인 목차를 구성한 뒤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박형준/4월/기뿔GS/16회/4번	채점자
	윤영우

1. 전반적인 총평

젍슨 청구항 관련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정답은 대부분 맞혀 주셨으므로 관련 판례와 그에 대한 사안 포섭을 누락 없이 잘했는지에 따라 점수가 갈렸습니다.

전제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A+B+C+D의 공지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갑의 의견서와 보정서 기재에 의해 A+B+C+D가 공지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서는 갑이 이를 착오로 공지된 것처럼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위 사실상 추정은 복멸되고, 결국 A+B+C+D의 공지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흐름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무효심판의 적법성에 대해 작성한 경우 추가 점수를 드렸으나, 이에 대해 길게 작성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3. 소결

어느덧 기뿔 GS 16회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풀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처음인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문제 4까지 충실히 작성해 주셨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주말마다 빠짐없이 나오셔서 답안을 작성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꾸준히 학원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개월 동안 받은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으나, GS 점수는 참고자료일 뿐 실제 시험 점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매 회차 누락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다음 달 실전 GS에서 한 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1]

I. 설득(1)

1. 신규성 - 조 29조 1항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바, 공지발명라 동일하거 않은 것을 요한다.

2. 공지 발명 - 선택 발명

공지된 발명 $A+B+C$ 를 상위개념으로 하는 하위개념 발명 $a+b+c$ 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되는데, 해당 발명은 선택발명에 해당한다.

3.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방법 - 判例

(1) 신규성 부정 요건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들은 구체적으로 개시하고있어야한다.

(2) 구체적 개시란

① [명시적 개시 (문언적 개시)] 선행문헌이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② [내재적 개시 (암시적개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상식이 기조되어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4. 사안의 경우

(1) 명시적 개시 여부 - 소극

甲의 특허 명세서에는 $a+b+c$ 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내재적 개시 여부 - 소극



甲의 특허 명세서에는 a, b, c를 포함하여 A라 B라 C 각각에 대해
 선택 가능한 하위개념 구성요소들의 ~~조합~~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다. 선택가능한 하위개념 구성요소들의 조합 실시례는 이론상 수백가지
 이상이고 바람직한 실시례로 a, b, c를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서 기술내용이 기초하여 甲의 명세서로부터
 a + b + c를 일차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변기는 어렵다.

(3) 소결

乙의 발명을 ~~甲의 명세서~~ a + b + c은 甲의 명세서에서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에 의해 선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5. 결론

여러시, 거절이유는 부당하다.

II. 선제(2)-1)

1. 진본성 - 법 29조 2항

기술발견특권 및 산업발견을 위해 ~~공리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공리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을 것을 말한다.

2. 효과가 현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선택발명의 진본성이 부정되지는 아니함 소극

(1) 과거 취례

과거 대법원 취례들은 효과의 현저성이 있어야 진본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하였다.

(2) 치근 순위제

~~1. 치근 순위제의 특징~~

위 치근 순위제는 구성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이전인 수안에서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면 전변성이 부정되기 않는다는 취지이다.

~~2. 유효한 발명의 전변성 판단방법~~

~~①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② 구성의 관련성을 따져봐야 하며, 이때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소결

따라서, 효과가 현저하더라도 않는 사정으로 선행발명의 전변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선행발명의 전변성 판단방법 - 순위제

(1) 일반적인 전변성 판단방법

①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② 구성의 관련성을 따져야 하며, 이때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선행발명의 전변성 판단방법

위와같은 전변성 판단방법은 선행발명의 전변성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며, 선행발명의 구성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① 하위개념제 ② 선행의 동기, 양식 ③ 구조적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효과의 크기 방법



반영의 효과가 선형반영에 비해 현저하다면 구성의 공간성을 극대화하는 유익한 자료가 된다. 구성의 공간성이 분별명하다라도, 현저한 효과를 갖는 경우 건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4) 고려가능한 효과의 범위

명세서 작성으로, 그 개재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고려 가능하다.

(5) 개선된 효과의 필요성

효과는 선택의 동기, 암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의선택인지 구성에 관한 한 경우 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다.

4. 검토

최근 위시계가 타당하다.

표. 5. 문(2) - 2)

1. 하위개념 개수

$A+B+C$ 의 하위개념으로 선택 가능한 조합 실시례는 이론상 수의 개수 이상이다.

2. 선택의 동기. 암시

선택가능한 하위개념 구성요소들이 다양하게 나열되어있을 뿐, $a+b+c$ 에 대한 선택의 동기. 암시가 있는 사정은 반이러 않는다.

3. 구조적 유사성

비교가능한 실시례로 기재되어있는 $a^2+b^2+c^2$ 는 $a+b+c$ 라 구조적으로 전혀 다르다.



4. 효과

그의 주장에 의하면 $a+b+c$ 은 $a^2+b^2+c^2$ 에 비하여 양적으로 더 나은 효과가 있다.

5. 결론 - 전반성 인정

그의 $a+b+c$ 에 한정된 효과가 없더라도, 앞서서 검토한 하위개념 계수, 선형의 등기.양성이 없으므로,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점, 양적으로 더 나은 효과가 있는 점을 ~~그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의 특원발명은 구성의 관련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전반성이 인정된다.

III. 실용 (3)

1. 용이성 요건 - 칙 42조 3항(호)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바, ~~특성의 기술자가~~ ~~특원양식 기술 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은 특성의 기술자가 발명을 습득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적어야 한다.

2. 용이성 요건 관련 위치시 - 특원 발명

(1) 직접 관련

특성의 기술자가 특원 당시 기술 수준으로 특수한 지식 부가 없이 발명의 설명을 보고 특원 각제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효과 관련

특성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택발명의 경우

(1) 라거 위치

동상여 가등과가 선택발명으로서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한하고
중분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처구 위치

일반적인 특징발명라 마한가적으 판단해야한다는 처구로 표시하였다.

(3) 각도

선택발명을 일반적인 ~~특징발명~~ 발명과 동일하게 명세서 기재요건을 요구하리,
요해의견거상은 진보성 판단시 고려함이 권장한다.

<끝>



55

[문제-2]

1. 기능성 청구항

청구항이 온 '완충제'를 결합시키는'이라는 기능성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기능성 청구항에 해당한다.

2. 청구범위 4항 본문

청구범위에는 변조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청구항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3. 해석

(1)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청구범위에는 변조받으려는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므로, 발명의 내용의 한 국점을 특정할 수 있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내용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해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면 안된다.

(2) 기능성 청구항 - 바란거나

아니한 발명은 기능성 청구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그러한 기능을 갖는 모든 발명 - 원칙

기능성 청구항의 경우,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그러한 기능, 효과, 성질 등을 가지는 모든 발명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예외~~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명세서의 발명이나 도면에 정의 또는 설명이 되어 있거나 등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



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기술적의미를 고찰해 용어의
의미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발명의 내용을 한정되어야 한다.

4. 사안의 경우

(1)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소극

甲의 발명의 설명이 양 도면에는 C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기능은 갖는 모든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발명의 설명, 도면의 기재에 의해 청구범위를 제한 해석
할 수 없다.

(2) 신규성 위반 여부 - 적극

甲의 발명은 $A+B+C$ 로, $A+B+C$ ~~사~~에 의해 신규성이 위반된다.
신규성 위반에 해당한다.

5. 결론

따라서, 甲의 특허출원권 등록받을 수 없다.

II. 선출(2)

1. 청구범위 기원의 원칙 - 3항 91조

특허발명의 변경방식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당하여야 한다.

2. 변형해석 법리 - 취지

청구범위에 기술, 효과, 성분 등에 의한 문건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

그 용어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조하여 특허발명이 기술적 구성을 한정하여야 한다.

3. 甲의 특허권의 보호범위

객관적 청구항은 가능식청구항이므로, 침해요건 판단시 발명의 설명, 도면을 참조하여 C는 예 C1, C2 또는 C3로 한정된다.

4. 문헌 침해 여부 - 소극

乙의 실시 발명은 A+B+C로, 甲의 특허발명과 문헌적으로 동일하지 않아 문헌침해가 부정된다.

5. 균등 침해 여부 - 적극

(1) 균등론

특허발명의 구성과 실시발명의 변경된 구성이 균등할 경우,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2) 가능식청구항에 균등론 적용 가능 - 예시

가능식 청구항에도 균등론 적용이 가능하다.

(3) 균등침해 요건 - 예시

① 리치해결요건의 동일성, ② 작용 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③ ~~구성의 동등성~~

③ 구성변경의 용이성을 요한다.

(4) 사안



① G의 실시방법의 구조는 A의 특허발명의 구조와 상이하나, 그기능이 동일하므로
 특허권사정이 없는 '관례해결위주의 동일성', 즉 '각용도와의 실질적 동일성'
 요건이 충족되고, ② C1, C2, C3, C5 사이의 차이는 동양의기술과가 별다른
 기술적 노고없이 쉽게 생각해낼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하므로 '주성변경의 용이성' 요건도 충족된다. 따라서 G의 실시방법
 은 준등침해에 해당한다.

6. 결론

~~따라서~~ G은 A의 특허발명의 준등 범위의 발명을 실시하여 준등침해를
 하였으므로, ~~따라서~~ G의 행위는 A의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끝>

[문제-3]

1. PBP 청구항

제조방법의 하정은 포함하는 물건보충 청구항이다.

2. 필요성

특발명 공에는 어떠한 제조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을 주권나 생결 등을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제조방법이 위공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3. 종류

(1) 반관성 PBP 청구항

제조방법에 의해 물건을 특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청구항이다.

(2) 부관성 PBP 청구항

제조방법에 의해 물건을 특정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의 청구항이다.

4. 적용예

2001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법안은 호법 42조 6항을 신설하였으나, PBP 청구항이라는 어휘만으로는 거전어휘를 구성하지 않는다.

5. 청구항 해석방법

(1) 각문

① 물건과 처셀과 ② 제법한정문 이 있다.



(2) 특허요건 판단시 - 뒤례시

1) 종래 뒤례시

제외방법에비해서만 특권을 특정할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주 제외방법 자체를 고려할필요 없이 청구범위 기재에
의해 특정되는 물건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2) 전방 뒤례시 ~~특권과제외~~

① PBP 청구항의 발명의 대상은 '물건 자체'로, 그 발명의 유형은
'물건 발명'에 해당하며, ② 청구범위 기재된 제외방법은
그 최종 생성물의 물건이 구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③ 따라서, 특별한 사정 유무에 관계없이 특허요건
판단시에는 그 기술적 구성을 제외방법 자체가 아닌,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해 특정되는 구나 성질 등을 갖는 물건으로 파악되
어야 한다.

(3) 침해요건 판단시 - 뒤례시

1) 원칙

특허요건판단시와 마찬가지로,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해 특정되는
구나 성질 등을 갖는 물건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2) 예외

특허법상의 제외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등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범위를 주 기재된 제외내지 한정할
수 있다.

14) 강도

전항 사례 및 참예한바에 따라 제법으로 한정된 여지를 얻어 전항 사례의 대도는 일용 규정하다.

II. 선출(2)

1. 특허요건

(1) 신규성 - 法 29조 1항

특허는 공계의 대가인바, 공계발명라 동일하게 출원권을 요한다.

(2) 진보성 - 法 29조 2항

기초발명전속권을사하여, 후 발명의 기술과가 공계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2. 청구항 1 내지 3 - 등록 가능

방법 A 및 방법 A에 의해 제조된 양호, 제조방법 B 라는 특정한 권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신규성 청구항 1 내지 3은 신규성 부정 X, Y의 공지가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나, 진보성이 인정되어 등록 가능하다.

3. 청구항 4 - 등록 불가

방법 B에 진보성이 인정되나 청구항 4의 특징인 제법 B 방법 B로 제조된 양호는 양호 X와 변다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모두 부정되어 등록 불가능하다.

4. 결론

청구항 1 내의 3은 등록권이 적법하며, 청구항 4의 등록은 부적법
하다.

4. 결론(3)

1. 청구항 2의 공구 - 부권정 PBP 청구항

~~방법 A에 의해 물건을 특징할~~

방법 A는 몇몇 특징을 포함하는 것이 별다른 구성상 특징이 없으므로
제법으로써 물건을 특징할 필요가 없는 부권정 PBP 청구항이다.

2. 명백히 불합리한 사건의 조부 - 적극

^{청구항 2와 같은} 부권정 PBP 청구항은 방법의 실체가 제법에 의해 권리범위를 벗어난 자재로
해석하면 명백히 불합리하여 제법 내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3. 침해 여부 - 소극

청구항 2를 제법 ~~내~~ (방법 A) 내로 제한 해석하여 침해여부 판단의
근거 방법으로 제조된 임구를 판매했다 하여 방법 B는 방법 A와 전혀
다르므로 2의 실시는 특허의 독립적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권리결론 - 적정 부담

따라서, 권리 범의 경리는 부담하다.

<끝>

[문제-4]

10.5

1. 특허심판 (法 133조)

목적상, 하기와는 특허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2. 전보성 (法 29조 2항)

기술발견 독권을 위해 통상적이거나 ^{공지}특허발명으로서 함께 (발명) 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3. 특허 甲의 특허발명

(1) 청구항 1의 종속 - 제 2항

전제부나 특징부로 이루어져있으므로 제 2항 청구항이다.

(2) 특허발명 합성

전제부나 특징부가 추가적인 결합된 전체로서 합성되어야 하므로,

'A+B+C+D+E'로 합성한다.

4. 선행문헌 적격

(1) 선행문헌 1 - 부정

甲의 출원 당시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선행문헌 적격이 부정된다.

(2) 선행문헌 2 - 인정

발견과 시기가 비슷하여, 선행문헌의 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5.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의 공지성



(1) 가제 취사실

전제부의 기재된 사안영역 특허권의 공제된 것으로 본다.

(2) 전합 취사실1) 전제

- ① 해당 구성요소가 특허권 공제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실안정의 문제이고,
 ② 그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부정을 주장하는 당사자
 에게 있으며 ③ 따라서 권리자가 사백담거나 법원이 허가한 사실
 로서 증명을 필요로 할까 하는 문제가 아닌 그 공제사실은 공제로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결론

특허법규 | 전제부 기재는 목적, 내용이 다양하므로 전제부 기재 사실
 만으로 공제성을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하며, 전제부 ~~배정기술~~
 구성요소가 명세서에 배경기술로 기재된 것으로 있는데 이러한 배경기술
 은 특허권 공제가능성을 요인으로 하지 않으므로 명세서에 배경기술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제기술이 될 수도 없다.

(3) 사안

전제부 A, B, C 및 D에 대해 그것이 전제부의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공제기술이라 할 수 없다.

5. 특허권쟁탈들의 공제 라인(1) 사실상 추정(1) 취사실

^{권재부의}
최신인이 인정받은 권재부를 공개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경우 그 권재부
의 권재부를 결정된 공개된 것으로 사실상 독점권이 인정된다.

2) 사안

4 A, B, C, D가 공개된 것으로 사실상 독점권이 인정된다.

(2) 복원

1) 뒤 사례

차도 기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반복될 수 있다.

2) 사안

후이 각으로 기재한 사실을 과장하여 복원 가능하다.

6. 부의 발명의 진보성 여부 - 뒤극

공제기술의 사실상 독점을 복원하여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7. 결론 - 가능성

따라서 가장실결이 인정된다.

<끝>

[이하 생략]

35

문제 -1

I. 문제 (1)

1. 선택발명 의의

선택발명이란 공지된 상위개념 발명이 포함되는 하위개념 발명을 의미한다.

2. 선택발명 여부

2의 발명인 Φ 의 발명 $A+B+C$ 의 하위개념 발명인 $a_1+b_1+c_1$ 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선택발명에 해당한다.

3. 선택발명 신규성 여부 - 12주

(1) 신규성 의미 및 취지 - 조항제 29조 제1항

특허는 공지의 대가인 바, 공지발명과 같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신규성 부정 요건 - 1항제1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한다.

(3) 구체적 개시 - 1항제1

①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 기재 존재하는 경우.

특정개념 개시로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기술능력과 선행발명 기재 내용에 기초해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 포함된다.

~~(4) 사안~~

~~Φ 의 특허 명세서에는 a_1, b_1, c_1 을 포함하여~~



(4) 사안

① 명세서 개시 여부 - 2주

특히 특히 명세서에는 $a_1 + b_1 + c_1$ 이 명세서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② 내제자 개시 여부 - 3주

a_1, b_1, c_1 을 포함하여 A, B, C 각각에 대해 선택 가능한 하위개념
구성요소들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특히
특히 명세서로부터 $a_1 + b_1 + c_1$ 이 존재를 인식 가능한 것이므로 내제자
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

2의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

나. 발명 내의 해결 - 보통 타당

2의 발명은 신규성 부정되므로 심사관의 신규성 위반 거론이유 통지는
타당하다.

II. 사안 (2) - 1)

1. 진범성 의미 및 취지 - 고위 제2항 제2항

특허발명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 진범성 판단방법

(1) 라거 - 취지



라거 순위제도 하라의 형제성이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신규 순위제

1) 일방적 발명 진보성 판단방법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지 살펴볼아야 하고, 지성의
관행성 따져볼아야 하며, 하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선택발명 진보성 판단방법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은 일방적인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지성의 관행성 판단할 때에는 ① 하위개념 개수,
② 선택의 동기, 양의 ③ 구조적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검토.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제 29조 제 2항 '쉽게 발명' 명용성
일반적인 발명과 다를 바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신규
순위제 타당하다.

3. 하라의 고려방법 - 순위제.

지성인들이 쉽게 도출되는지를 판단할 때 발명의 하라를 측정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하라가 선행발명에 비해 현저하다면 지성의 관행성 추론하는
유리한 자료가 된다.

4. 고려 가능한 하라의 범위 - 순위제

다에서 기재된 하라를 통상의 기술자가 추론 가능한 하라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기재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추가 발명자로
제3자의 증명이 허용된다.

5. 발명 (2)의 해결.

최근 취지에 따르면, ① 하자가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선택
발명의 진본성이 부정되지 않고, ② 선택발명의 진본성 판단은 일반적
발명과 같이 차이 극복 여부, 사상의 관념성을 따져 하자로 함께
근거함이 타당하다.

II. (선출 2) - 2)

1. 2 발명 진본성 판단.

(1) 하위개념 개수.

甲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A, B, C 각각에 대해 선택 가능한
하위개념 구성요소들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어 하위개념 개수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2) 선택의 동기. 양칙 - 12쪽

선택발명에 선택 가능한 하위개념 구성요소들의 조합 표시례가
이중성 수의 개수 이상이고, 바람직한 표시례는 $a_2 + b_2 + c_2$ 만
기재되어 있어 동양의 기술자가 $a_1 + b_1 + c_1$ 를 선택함에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구조적 유사성 - 12쪽

$a_1 + b_1 + c_1$ 와 $a_2 + b_2 + c_2$ 는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구조체로

유사성이 있다면 볼 수 없다.

(4) 진보성 종합 판단. - 2점

그리 발명 $a+b+c$ 는 T_1 의 $A+B+C$ 에 비해 구성의 순서성이 인정되며,
차이도 인정되므로 T_1, T_2, T_3 하라가 양자도 형제하지 않아도,
 T_4 내의 하라가 있다는 점도 주장하며 추가 실험 데이터를 제공해서 이를
증명했다면 은 진보성이 인정된다.

2. 실험 (2)-2) 다해결 - 진보성 있음

그리 출생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된다.

3 IV. 실험 (3)

1. 용이발시 어떤 의미 및 취지 - 이것에 대한 제3항 제1호

발명의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선택발명 발명의 발명 기재사항

다) 라기 수배제

비교대상과 차이가 인정되는 있지만, ~~발명~~ 선택발명이라는 하라는
기재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히 기재하여야 명백히
구성이 충족된다.

2) 라기 수배제

보완적이지 않은 발명에 해당하는 선택발명의 경우 그 하라는 인식하는

(2) 조항 제 2항 제 2항

상기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출원발명 작성

(1) 기능을 구성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뒤집기

기능, 작용, 명칭, 특징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이상, 발명의 지에서 이를 제외할 수 없다.

(2) 일반적 처리방위 해석 범위 - 뒤집기

① 처리방위는 발명본과 같은 사항은 기재하는 것으로, ② 발명의 내용의 한정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고 ③ 이를 제한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④ 이는 기능적 처리방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사안

2의 불 출원발명은 청구범위 기재되어 있는 '반 삼각체 (A)라 복수의 원(B)도 안함시엔 결합시키는' 기능 자체를 구성로 보아 이를 포함시켜 안함 결합수단 (C)을 포함하는 안라인스케이트로 한정해야 한다.

4. 선행발명 작성

선행발명은 안라인스케이트 (A+B+(4))은 안함시엔 결합시키는 기능은 동일하지만 구성은 상이한 발명이다.

6. 대비

① ~~상기~~ 신규성 위반



출원 전 내된 선행발명 $A+B+C$ 라 할 때 $A+B+C$,
(C는 C1, C2 또는 C3의 값)는 구조 상이하나 기능이 동일해 신규성

위반하다.

② 진범성 - 구조

C1, C2, C3는 C4에 비해 내성이 현저히 우수해 C4의 하의
차이가 인정되어 진범성이 인정될 수 있다.

6. 발원 내의 해명. - 등록 가능

후의 출원발명은 진범성이 인정되어 등록 가능하다.

4.5 II 발원 (2)

~~1. 기능적 청구항 여부~~

~~2의 실시 중인 인라인 스케이트 (A+B+C)는 안출시키는 탈착시키는 기능이
있어 기능적~~

1. 특허발명 확성.

(1) 발명해석, 범위 적용 - 취지

① 특허발명의 완성범위는 차지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며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② 차지범위에 가능, 하라. 성질 등에 의한 문건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 당연히 기재안으로 기각 가능 할 수 없는

경우 발명의 실제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기각 가능 한지

하여야 한다

(2) 사안

특허발명은 $A+B+C$ 를 포함하는 A 와 B 를 포함시키는 결합시키는
 일차원 조합수단 C 를 포함하는 일차원 스케이트로 C 는 C_1, C_2, C_3 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2. 실시발명 학제

2의 실시 중인 발명은 일차원 스케이트 ($A+B+C$)로 구조가 상이하냐
 기능은 동일한 발명이다.

3. 균등권 적용 여부 - 적극

수단(수)는 기능적 ~~차이~~ 차이방식은 균등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 균등침해 여부 - 적극

특허 발명 $A+B+C$, C 는 ($C_1 \rightarrow C_2, C_3$) 2의 실시발명 $A+B+C$ 는
 구조가 다르 균등침해 인정하지는 않는다.

5. 균등침해 여부 - 적극.

다만 ① 2의 실시발명 구조는 특허발명의 구조와 상이하지만, 그 기능이
 동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제해결을 위한 동일한, 작용과라니
본질적 동일성이 충족된다.

㉠ C₁와 C₂, C₃의 차이는 동상의 기술자가 별도로 기술적인
인해 많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야만 기술적인 용어
충족된다

6. 실용적인 해결

2의 행위는 특하게 창상이다

- 끝 -

5

문제-3

2. 실용적인

1. Dbp 창상 의미

제2항의 항쟁을 포함하는 물건발매 창상을 의미한다.

2. 필요성 - 수직적

물건발매 중에는 어떠한 제2항에 대해 물건은 주나 성권
물건은 작성으로 특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경쟁하여 제2항에
인해한 물건을 특징할 수 없어 없는 사유가 있을 수 있다.

3. 종류

① 작성 Dbp 창상으로 제2항에 대해 물건을 특징하는 필요성
있는 경우의 창상을 의미한다.



㉠ 복합성 Pbp 항균제는 제2항법이 다른 목적을 특징한 판권이
있는 경우의 항균제를 의미한다.

4. 허용여부.

2007년 7월 1일 시행 개정법은 3 조 제 4항 제4항 제4항을
삭제하고 3 조 제 4항 제6항을 신설해, 반면의 자유로운 투쟁을
허용해, Pbp 항균제라는 이유만으로 거액이유가 되지 않는다.

5. 항균제 해독방법.

(1) 항성 1

① 목적자제성

제법은 목적의 가성이 되지 못해 목적의 구조나 성분 등을
특정하는 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

② 제법한정성

제법한 목적의 가성이 될 수 있다는 점.

③ 발명원칙성

간접 Pbp 항균제의 목적은 목적에 있으므로 목적자제성, 복합성 Pbp
항균제의 목적은 제법에 있으므로 제법한정성 따르는 점.

(2) 항성 2

① 일원성

특이성 판단 시도 항비특성 판단 시도 목적자제성, 제법한정성 또는

발명실용성을 취하는 견해.

② 이점성

특허법상 판단 시 물건자체성, 침해성판단 시 제법항상성
취하는 견해.

표. 12202

(3) 검토.

PbP 청구항의 유형은 물건방범이므로 물건자체성이 타당하나,
침해성판단 시, 부권장 PbP 청구항의 경우 제법항상성이 타당하
여지가 있다.

표. 12202

1. PbP 청구항 여부

특히 출원발명도 청구항 2항과 청구항 4항 '방법 A로 제어되는',
'방법 B로 제어되는'으로 제어방법이 한정된 발명임을 인코디
청구항이므로 PbP 청구항에 해당한다.

2. 관련 특허법

(1) 신규성 - 조항제 29조 제1항

특허는 공해의 대가이므로, 공지발명과 같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진보성 - 조항제 29조 제2항

출원발명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출원 방법 학제.

(1) 종래 수법제

제2방법에 대해서만 출원된 특정한 수법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항 유무로
사상이 그러한 사항 없는 경우에만 제2방법 자체를 고려하는 필요 없이
출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2) 진법 수법제

① PBP 처우상의 발명으로서 대상은 제2방법이 아니라 출원 자체이므로,
출원발명에 해당하진 ② 제2방법은 출원의 진나 명인 등을 특정한
수법이라 이해를 가진 ③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특허청 판단능이
있는 제2방법 한자어 아니라 제2방법 자체 포함의 포함한 출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3) 사안

방법 A로 제조되는 잉크에서 방법 A는 번짐이 현저히 적어 그 제법이
출원의 명세서에 영향을 주며, 방법 B는 제조시간 현저히 단축시켜
그 제법이 출원에 영향을 주므로, 위의 출원발명은 방법 A나 방법 B의
제2방법 포함한 출원발명으로서 처우한다. 처우한다 나 합성한다 한다.

4. 대비.

(1) 처우 1

방법발명 이므로 PBP 처우 해당하지 않고 방법 A 자체 발명
인정된다.

(2) 청구항 2

DPB 청구항은 ① 링크 수와 방식이 별개 적은 영의 제각각방법으로
제각각은 링크는 그 방식이 별개 적어 신규성이 인정된다, ② 방식이 다른
항이 있어 정형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항 3

방법항목 청구항은 방법 또는 제각각방법 Y가 포함되어 있어 신규성도
부정된다. 항이 별개 적인 시는 관습으로 진보성 인정된 것이다.

(4) 청구항 4

DPB 청구항은 ① 방법 또는 제각각은 영의 링크 수와 별개 적어 차이가
있어 ② 신규성도 부정된다 ③ 별개 적인 항이 포함되어 있어 ~~진보성~~
인정될 수 있다. ^{방법 B의} 진보한 것은 아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특허 출원은 청구항 2는 신규성·진보성 인정되나,
청구항 4는 신규성·진보성 ~~부정된다~~ ^{등류 부정} 부정된다.

5. 결론 내리 해결 - 등류 부정법

특허 등류는 부정법이다.
결론적으로 명확히 해야



15
1. 문제 (3)

1. 침해의 판단 - 511제

① PBP 제항은 물건 자체가 이므로 ② 제항방법은 물건이 가진 성질을
특정하는 수단으로 의미가 있고 ③ 제항방법의 기재를 포함해 제항방법의
다양 특성은 가진 성질을 갖는 물건으로 파악해야 한다. ④ 다만,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면 제항방법으로 한정해서 가능하다

2. ~~한~~ 2의 침해 여부 - 79조

(1) 동일침해 여부 - 12조

2의 방법 C로 제정한 잉크와 B의 방법 A로 제정한 잉크는 그 구조나
성질이 상이해 동일침해 부정된다.

(2) 준동침해 여부 - 79조

방법 A로 제정한 잉크는 잉크 X에 있어서 물질 P를 더 포함하는 B에
비하여 기능성 특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2의 잉크와 실질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준동침해 인정한다

3. 문제 (2)의 해결 - 76조 타당

B의 76조 타당하다

- 끝 -

문제 4

2. 1. 2. 3. 4.

1. 우선순위의 의미 및 취지 - 조항제 132조.

공익상, 우선순위가 있는 특허를 인정되어야 한다.

2. 관련 특허권

(1) 상충권 - 조항제 29조 제1항

특허는 공해의 대가이므로 금지권과 동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 전방성 - 조항제 29조 제2항

출원발명은 금지권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접근 청구항 여부

(1) 의미

권리범위와 특징부를 이루는 청구항을 의미한다

(2) 사안

특허 청구항은 'A, B, C 및 D를 포함하는 연속여라기의 게이트분할

장치가 있어서' 이 권리범위 'E를 더 포함하는 연속여라기의

게이트분할장치' 이 특징부를 이루고 있는 접근 청구항이 해당한다.

4. 출원발명 한성

특허 출원발명은 권리범위와 특징부가 판명된 유기적 결합 관계를 전체로 보아야 한다.

h. 선행발명 인정

① 선행발명 1

전제부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② 선행발명 2

특정부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6. 전제부 공지성

(1) 공개 취지

발명인이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이나 명세서에 기재기술로 기재한 사항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본다.

(2) 전방 취지

< 1) 전제

① 발명 또는 선행발 명언해 있어 출원 전 공지 여부는 ③ 사실 인제리 문제이고 ② 증명책임은 복제된 구성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④ 모든 공지사항은 증거에 의해 증명이 필요하다.

2) 본부

① 청구범위 전제부 개하는 그 목적이나 내용이 다양하므로.

② 어떤 구성요소가 전제부에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지성 인정

가능 되기 못하며 ③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가 명세서에 기재기술

또는 공지기술로 기재될 수도 있는데 ④ 배제기술 또는 공지기술은

기준지 기술이나 공지를 얻은 하지 않으므로 ⑤ 명세서에 배제기술

또는 공지기술로 기재되어 있다면 하여 그 자체로 공지기술로

볼 수는 있다 .



이 경우

출원인이 어떤 다른 기재하였는지 알 수 없는 사항을
명세서 수치에만 근거로 공지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데는 부정확하지
않아 관습 수습에 상당하다.

(4) 사안

전제부에 A, B, C, D 기술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그 자체로
공지가된 것으로 인정된다.

7. 청구와 불명

(1) 전제 - 수습

심사요청을 심사청과 출원인이 어떤을 관하는 관행으로 출원반영의
일부가 출원 전 공지된 것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토대로
이러한 상사 관행해야 한다.

(2) 결론 - 수습

① 출원인이 구성요소를 상세히 기재하고 명세서 명세서 공지가된 것이라는
주장을 기재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함이 타당하다. ② 출원인이 상세로 출원 당시
공개되어 아예는 명세서 상세로 잘못 기재함이 없다면 추정이
가능하다

(3) 사안

특이 의견서 제출 당시 A, B, C, D는 공지된 구성으로 기재되었으나,
무해상판 중 상행운환이 의견서 제출 당시 공개되어 있었지만,

출원 당시에는 공지되지 않았던 선행기술에 대한 공개공보에
비교하여서 사안을 함께 더더 선행기술의 1의 선행기술로 기재 변경은
가능하다면 특재의 복원이 가능하다.

8. ~~불공~~ 문제(4)의 해결 - 기각실결

- ① 선행기술 2는 전제부 구성을 개시하지 않아 신규성이 인정된다.
- ② 선행기술 2로부터 전제부 구성을 용어에 표현이 불가하므로 신기술로
인정된다.
- ③ 공지된 사안상 특재의 복원 가능하다므로 ~~특재~~ 우려사항은 없음
임으로 기각된 것이다

-이하생략-